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19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2조(「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3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4조(「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5조(「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제6조(「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 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학병원장) ① ~ ⑤ (생	제14조(대학병원장)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6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u>게 된 경우</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치과병원장) ① ~ ⑤ (생	제12조(치과병원장)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6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나 불가능하게 된 때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제2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2.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	2
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 </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학병원장) ① ~ ⑤ (생	제10조(대학병원장)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6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u>게 된 경우</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치과병원장) ① ~ ⑤ (생	제10조(치과병원장)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6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	3.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u>게 된 경우</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